##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51

발의연월일: 2020. 10. 8.

발 의 자:이탄희・박광온・양경숙

앙이원영 · 이용빈 · 이원욱

이정문 • 이학영 • 정일영

최인호 · 최혜영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관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위원인 총 7명으로 구성하는데, 구성원의 과반수를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 1명과 법관 3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외부위원 3명도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으로써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 법률 제 호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6명"을 "8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 1. 법관 3명
-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 3.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 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관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① (생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	②
원 <u>6명</u> 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u>8명</u>
3명을 둔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	제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	
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u>법</u>	<u></u> 다
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	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u>이 각각</u>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u>1. 변호사</u>	<u>1. 법관 3명</u>
<u>2. 법학교수</u>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	<u>는 변호사 1명</u>
한 사람	3.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
	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
	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
	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u>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u>
	은 여성이어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